

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	7일
청산인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청산법인	명칭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
해산 연월일

해산 사유

「민법」 제86조제1항 및 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청산인)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.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.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.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
신고인

→

접수

→

검토·확인

→

결재

처리기관: 중소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